

학교 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
정벌적 사법에서 회복적 교육으로

- ▶일시 : 2013. 6.12(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학교 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
정벌적 사법에서 회복적 교육으로

- ▶일시 : 2013. 6.12(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주최 : 국회의원 배재정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생태·인권·평화특별위원회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문의 : 배재정의원실 02-784-8410

정벌적 사법에서 회복적 교육으로

학교 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

■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오후 3시

■ 장소: 국회의정관 101호

■ 주최:

- 국회의원 배재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생태·인권·평화특별위원회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 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 사회:

- 배경내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순 서>

여는 말	
3:00~3:20	<p>[여는 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 국회의원 배재정 :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김정훈
1부 교육부의 학교 폭력 대책의 현황 및 평가	
3:20~4:00	<p>[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본 교과부의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평가 :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 <p>[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가 학부모들에게 미친 영향 : 고유경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참교육학부모회) -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징계와 파행사례 : 구희현 (학교폭력공대위) - 학교폭력 의견 조사 및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 : 정제영(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학교폭력 예방정책 중점 연구소)
2부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4:00~4:30 (사례발표)	<p>[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과 사례 : 박숙영 (좋은 교사 운동) - 학생인권존중,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교 문화 변화로 학교 폭력이 줄어든 사례 : 이소정 (홍덕고 학생) - 덴마크 학교 폭력 대응 사례, 학생자치권 확보사례 등 : 오연호 (오마이뉴스)
4:30~5:30 (발제 및 토론)	<p>[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 강영구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회복적 절차를 중심으로 한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생자치, 학생인권활성화를 위한 학생인권법

<목 차>

1부

<발제>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 07

<토론>

- 고유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장) 41
- 구희현(학교폭력공대위) 49
- 정제영(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학교폭력 예방정책 중점 연구소) 53

2부

<사례>

- 박숙영 (좋은 교사 운동) 59
- 권소정 (홍덕고 학생) 77
- 오연호 (오마이뉴스) 93

<발제>

강영구 (변호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101

1부

교육부의 학교 폭력 대책의 현황 및 평가

<발제>

교과부의 학교 폭력 대책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

-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와 학교 폭력 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

I. 서론

1. 학교폭력대책의 추진 경과
2. 교과부의 ‘학교 폭력 대책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 목적
3. 조사 방법

II. 본론

1.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2.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
 - 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
 - 나.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평가
 - 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3. 학교 폭력의 원인
 - 가.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
 - 나.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 이유
4.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가.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정책
 - 나. 학교 폭력 처리 절차 개선방안

III. 결론

I. 서론

1. 학교폭력대책의 추진 경과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접근 시작(1995)

○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1995년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함.¹⁾



또 金甲暉(김갑재) 생활지도 담당장학관(서울시교육청)은 불량서리를 막기 위해 실태파악·해체·선도·계속지도 등 4단계방안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이밖에 孫相浩(손상호) 개포중교장은 민간카운슬링단체의 설립과 적극적인 활용을, 金秀哲(김수철) 경찰청현 사파장은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위반자 처벌규정강화 및 대도시에서의 청소년야간불행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학교·사회·국가가 각자 맡은 임무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이 가생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학부모 모두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덮어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와 일선교사를 학교폭력문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학교폭력배종에서 종교교회학생이 43.4%로 가장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를이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프로그램으로 수용함으로써 「거리의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건전한 청소년문화공간 확보△전학학습자의 재진학기회제공△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지원단체의 육성△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비등은 모두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학교 폭력 9,068명 구속 <동아일보 1995.12.14.>

□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05~2009)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된 일을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동으로 범정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함(2005.02.22.).

- 5개 영역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지원 추진 체제 구축,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설치 (판사, 검사, 변호사, 학부모대표, 청소년관련전문가, 교사 5-11인)
-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강화
- 우선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선임 및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예방교육 등을 강화
- 「학교폭력 추방의 날」(3, 9월) 지정 운영,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매년 3~4월),
- ON-OFF LINE상의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 단속,
-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및 사이버 유해환경 정화 강화,
- 영상물 심의 강화, -학교内外의 안전구역(Safety Zone) 추진,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 청소년 상담, 선도시설 설치 확대,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디어 공모전

□ 2012년 학교 폭력 대책

주요 변화 사항

- 학교장에게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권한 부여
-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 누적 관리
-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징계사항 기록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변경 (학부모비율 50%)
- 인성관련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내실화하고,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 복수임제 도입
-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관련 분쟁지원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하여 교사의 업무지원
- Wee클래스 설치 확대 및 상담인력 확충
※ '12년 중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 설치 및 상담인력 배치
- 스승의 날 포상시 생활지도 부문 포상비율 확대 : 20% → 1/3 이상
- 학습연구년 운영 인원의 1/3 이상을 생활지도 영역 우수교사로 선정
- 수석교사 선발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실천이 우수한 교사 우대
- 학교폭력 은폐시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
-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실시
- (도덕, 사회, 국어)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 (동아리) 스포츠클럽(3,000개), 예술동아리(500개), 독서동아리(500개) 확대
- (체육) 중학교 주당 체육수업 시수 50% 증대, 스포츠리그 확대
- (학교생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에 참여 및 동의서 제출
-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 신설
-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추천서에 인성분야 반영
-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활동 실시

주요 변화 사항	
※ '12년 4,000교 시범 → '13년 모든 학교	
• 모든 학생 대상 정서·행동발달 전반 선별검사 실시	
• Wee프로젝트 포털, 한국청소년상담원,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 사이버 상담 활성화	

2. 교과부의 학교 폭력 대책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2012년 대구 중학생 유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은 전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는 대대적인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3200억을 쏟아 부었다는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경산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학교 폭력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에서는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를 강행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7월에 '현장 중심 학교 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학교 폭력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 조사 방법

1)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

교육부의 학교폭력정책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모두 포함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온라인회원 100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빈도	%
전체		1007	100%
경력	5년 미만	89	9.1%
	5년~9년	150	15.3%
	10년~19년	376	38.4%
	20년이상	365	37.2%
급별	초등학교	309	31.6%
	중학교	317	32.4%
	인문계고	296	30.2%
	전문계고	49	5.0%
설립별	특수학교	8	.8%
	국공립	817	85.0%
	사립	144	15.0%
성별	남	513	53.2%
	여	452	46.8%

지역	대도시	417	43.0%
	중소도시	381	39.3%
	읍면지역	171	17.6%
시도	강원도	45	4.6%
	경기도	230	23.5%
	경남	51	5.2%
	경북	56	5.7%
	광주	50	5.1%
	대구	47	4.8%
	대전	32	3.3%
	부산	39	4.0%
	서울	152	15.5%
	울산	24	2.4%
	인천	55	5.6%
	전남	75	7.7%
	전북	68	6.9%
	제주	13	1.3%
전교조	충남	31	3.2%
	충북	12	1.2%
	조합원	709	71.8%
	비조합원	279	28.2%

2013년 4월 8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전국 교사들 1007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인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에 근무하는 5년이상의 경력교사가 다수 참여하였다. 질문 항목에 대한 교사들의 동의정도를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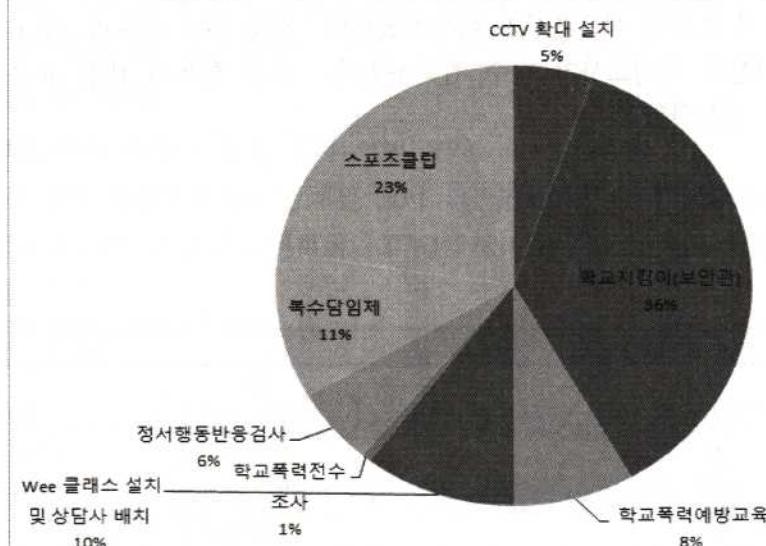
II. 본론

1. 2012년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 관련 예산에 관한 분석 2)

(단위 :천원)

정책	2012	2013
CCTV확대설치	9689000	3515000
학교지킴이(보안관)	64833000	70270000
학교폭력예방교육	14580000	14180000
Wee 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	18540000	24430000
학교폭력전수조사	1150000	2000000
정서행동반응검사	9996435	10716178
복수담임제	19197729	19197729
스포츠클럽	40240827	학교체육활성화 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었음

2012년 학교 폭력정책관련 예산 집행현황 비율



- 학교 폭력 정책 관련하여 가장 예산비율이 높은 부분은 학교지킴이 (보안관) 관련 예산으로 650억 가까이 지출되었고, 2013년에도 700억가까이 지출되었다. 3)배움터

2) 교육부 2012년 결산자료, 2013년 예산자료

3)'지킴이'가 '야수' 둘변 아이들은 홀로 떨었다<동아일보 2012-07-31>

학교 배움터지킴이 전직 경찰, 중학생 성추행 '구속' <경찰 자유발언대 2010.3.29.>

지킴이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희롱사건 등 그 자질과 실효성이 의심되어왔다. 학교보안관의 평균연령은 59세, 전직 경찰관 532명(32.5%), 전직 직업군인 341(2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소년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어 상담 지원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업무를⁴⁾ 주로 맡아왔다. 이러한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 학교폭력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학교 폭력 예방정책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법인력의 확충에 쏠려있음을 보여준다.

- 복수담임제가 190억, Wee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에 185억이 소요되었다. 2013년 초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1000명이 대량해고된 데 비해 .5)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복수담임제에 쓰인 예산 정도만 배치된 것이다.

- 결정적으로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피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예산이 전혀 집행되거나 책정되지 않았다. 안전공제회를 통해 물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 이외에 피해 학생의 복귀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의 배치 없이 배움터 지킴이 등의 사법, 감시 인력만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는 145억이 소요되었고, 2013년에도 141억으로 예산규모가 다소 줄었다. 2013년 경산사건 이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방송을 통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학교 폭력 발생 시, 가·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한 교육, 폭력이 발생한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교육, 가·피해자 가족 상담까지 회복을 위한 방대한 교육 수요를 추산할 때 매우 적은 예산 책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교폭력전수조사(11억)와 정서행동반응검사 (99억 9천여만원)에 112억가량 소요되었고, 2013년에도 12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검사 결과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원에 대한 준비 없이 검사에만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

천 안서 배움터지킴이가 학생 폭행 논란 <민중의 소리, 2012-04-16 >

4) 학교보안관의 평균연령은 59세, 전직 경찰관 532명(32.5%), 전직 직업군인 341(2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적지 않은 나이대여서 급박한 범죄상황에 순발력 있는 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받았었다.<'준비 안된 학교보안관' 시행 열흘도 안돼 서둘 초교서 성추행 , 뉴시스 2011-03-11>

5) 학교폭력 없앤다더니…전문상담사 1000명 해고 <뉴시스, 2013-02-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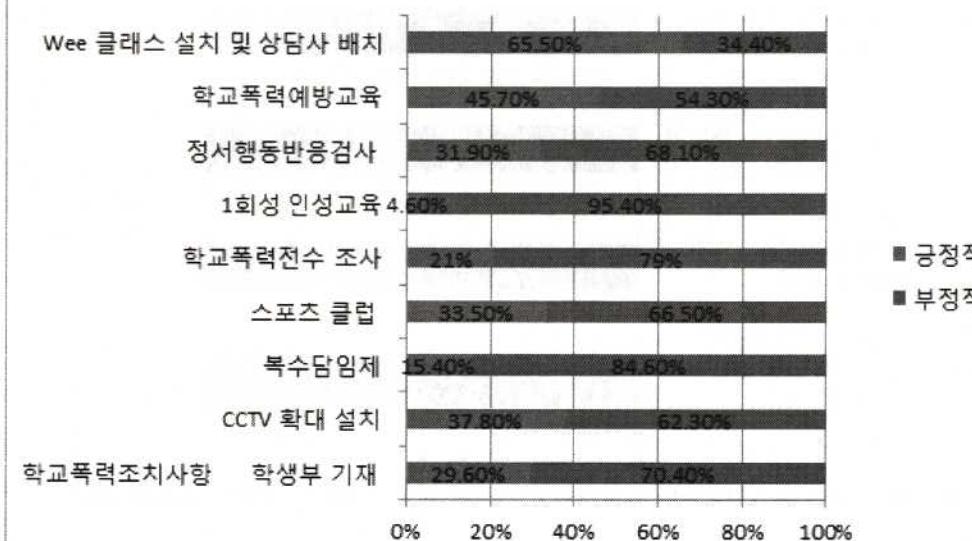
되고 있는 것이다.

2.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

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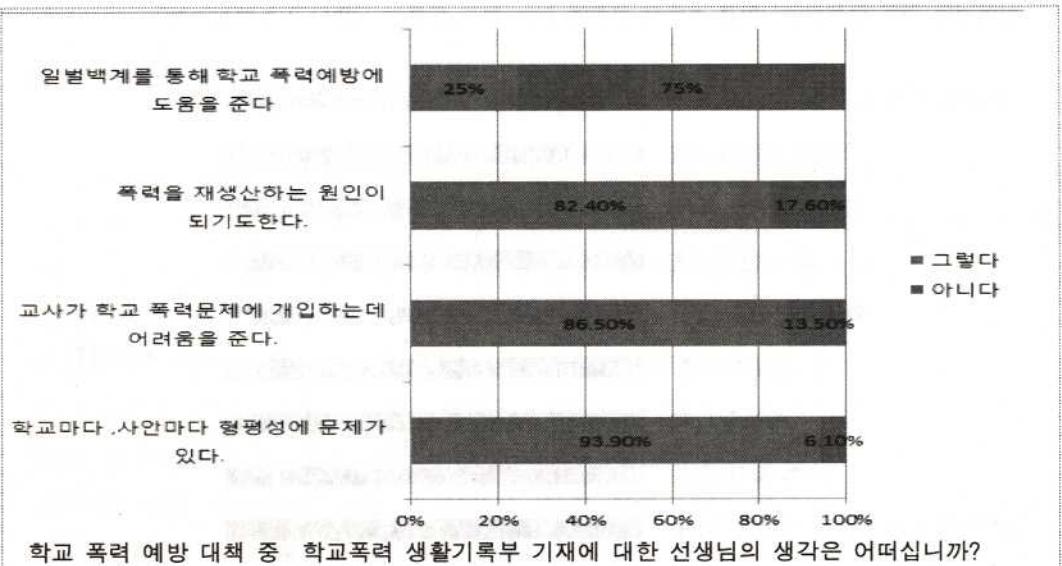
- 대다수의 교사들 70% 이상이 교과부 학교 폭력 대책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대책들에 대해 Wee 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 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 대책은 현장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는 상담사 배치 등 학교 폭력 당사자의 치유를 돋는 회복적 시스템이 아닌 감시와 징벌 위주의 학교 폭력 대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예산을 이유로 전문상담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학교 현장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 감시와 처벌 시스템의 강화 정책(학교 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CCTV 확대 설치)이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70.4%, 62.2%로 우세하였다.
- 1회성 인성교육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95.4%에 이르러 인성교육 강화라는 교과부의 구호는 학교 현장에서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 복수담임제 복수담임제에 대한 답변 역시 학교 폭력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84.6%였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노린 복수담임제는 전시성 행정에 예산 낭비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학교 폭력 전수조사와 정서행동반응검사 인권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되어야 만 감지될 수 있는 학교 폭력 실태를 기계적인 반응으로 알아내려고 했던 학교 폭력 전수조사(도움이 안되었다. 79.1%)와 정서행동반응검사(68.1%) 역시 학교 폭력 실태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이 조기에 감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학교 폭력 전수조사(도움이 안되었다. 79.1%)와 정서행동반응검사(68.1%) 역시 학교 폭력 실태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학교 폭력 신고율을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83.2%) 학교 폭력이 감지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다음 정책들이 학교 폭력의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긍정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정적
학교 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①5.5%	②24.1%	29.6 %	③42.3%	④28.1%	70.4 %
CCTV 확대 설치	①6.3%	②31.5%	37.8%	③47.9%	④14.4%	62.2 %
복수담임제	①1.7%	②13.7%	15.4 %	③43.6%	④41.0%	84.6 %
스포츠 클럽	①3.3%	②30.2%	33.5 %	③45.3%	④21.2%	66.5 %
학교폭력전수 조사	①2.5%	②18.5%	21%	③46.8%	④32.3%	79. %
1회성 인성교육	①0.5%	②4.1%	4.6%	③51.3%	④44.1%	95.4 %
정서행동반응검사	①2.5%	②29.4%	31.9 %	③47.3%	④20.8%	68.1 %
학교폭력예방교육	①3.8%	②41.9%	45.7 %	③42.7%	④11.6%	54.3 %
Wee 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	①14.7%	②50.9%	65.6 %	③28.0%	④6.4%	34.4 %

나.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평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적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
1) 대학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생기부 기재조치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없다.	①33.9%	②46.4%	80.3%	③16.5%	④3.3%	19.7%
2) 절도 등의 소년 사법 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학교마다 양형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	①47.1%	②46.8%	93.9%	③5.3%	④0.8%	6.1%
3) 생활기록부 기재로 오히려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보복등 폭력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①34.2%	②48.2%	82.4%	③16.4%	④1.3%	17.6%
4) 징계 사항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입시,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중징계이다.	①39.5%	②38.1%	77.6%	③16.6%	④5.7%	22.4%
5) 입시, 취업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면 사과 등 낮은 수위도 모두 처벌이 된다.	①23.9%	②49.9%	73.8%	③22.6%	④3.6%	26.2%
6) 생기부 기재 지침이 졸업후 삭제로 변경되었	①28.	②5	83.	③14	④	16.3

만 입시, 취업에 반영되는 것은 졸업전 기록 이므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9%	4.8%	7%	.4%	1.9%	%
7) 생기부 기재 때문에 법적 다툼이 많아서 학교 폭력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39.6%	46.9%	86.5%	11.5%	2.1%	13.5%
8) 일별백계를 통해 학교 폭력의 근본적 예방에 도움이 된다.	①8.1%	②16.9%	25.5%	③47.5%	④27.5%	75%
9) 교육적 해결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필요악의 성격이 있다	①16.9%	②38.9%	55.8%	③29.5%	④14.7%	44.2%
10) 학폭관련기록과 생기부 기록을 분리해야한다.	①41.9%	②36.8%	78.7%	③13.8%	④7.5%	21.3%

- 학교 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표1>
- 경력순으로 살펴보았을 때 5년이하 68.5%, 5년~ 9년 60%, 10년~19년 73.7%, 20년이상 72.9%로 나타나,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생기부 기재 지침 변경으로 낙인효과가 보완되었다는 교과부의 의견과 달리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83.7%에 이르렀다.
- 생기부 기재 이후 교사가 학교 폭력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의견이 86.5%였다.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에 가장 근접해있는 교사가 오히려 생기부 기재 정책 때문에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형평성문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93.9%에 이르렀다.
- 교과부의 의견대로 생기부 기재가 일별 백계를 통해 학교 폭력의 근본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는 75%의 대다수 교사가 동의하지 않았다.
- 필요악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55.8%)만 동의했다. 감시와 처벌 위주의 대책이 실제 효과가 미미하고 형평성 등 문제가 많음에도 다른 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오히려 교사들이 문제적 대책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반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생기부 기재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는 기록하되,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78.7%였다.

- 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표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이 학교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 고 있 다.	대체 로 잘 되 고 있 다.		대체 로 안 되 고 있 다.	매우 안 되 고 있 다.	
1)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	①26.5%	②56.7 %	83.2	③15.6 %	④1.1 %	16.7
2) 일상적인 반차별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①6.0%	②34.7 %	40.7	③47.5 %	④11.8 %	59.3
3)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	①5.3%	②24.9 %	30.2	③53.6 %	④16.3 %	69.9
4)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한 공감능력	①6.7%	②35.3 %	42	③47.8 %	④10.1 %	57.9
5)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	①6.2%	②29.0 %	35.2	③51.1 %	④13.7 %	64.8
6)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①6.7%	②29.2 %	35.9	③47.1 %	④17.0 %	64.1

<표4> 다음 중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상적인 반차별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①59.3%	②33.8%	93.1	③6.1%	④0.8%	6.9
2)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	①56.2%	②36.6%	92.8	③6.5%	④0.7%	7.2
3)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한 공감능력	①55.4%	②39.0%	94.4	③4.7%	④0.9%	5.6
4)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	①66.3%	②30.8%	97.1	③2.5%	④0.5%	3
5)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①66.7%	②28.4%	95.1	③4.2%	④0.7%	4.9

-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83.2%이었다.
- 교사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꼽은 내용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 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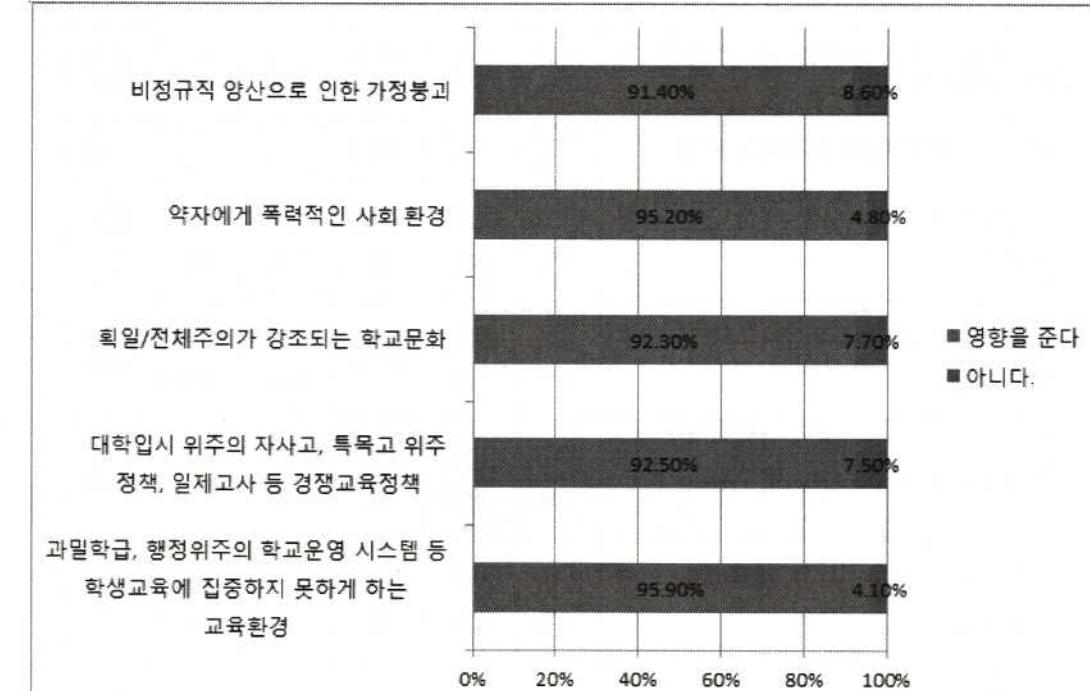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예방에 꼭 필요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	필요하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	97.1%	64.8%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95.1%	64.1%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한 공감능력	94.4%	57.9%
일상적인 반차별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93.1%	59.3%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	92.8%	69.9%

3. 학교 폭력의 원인

가.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

다음 여러 요소들이 학교 폭력이 증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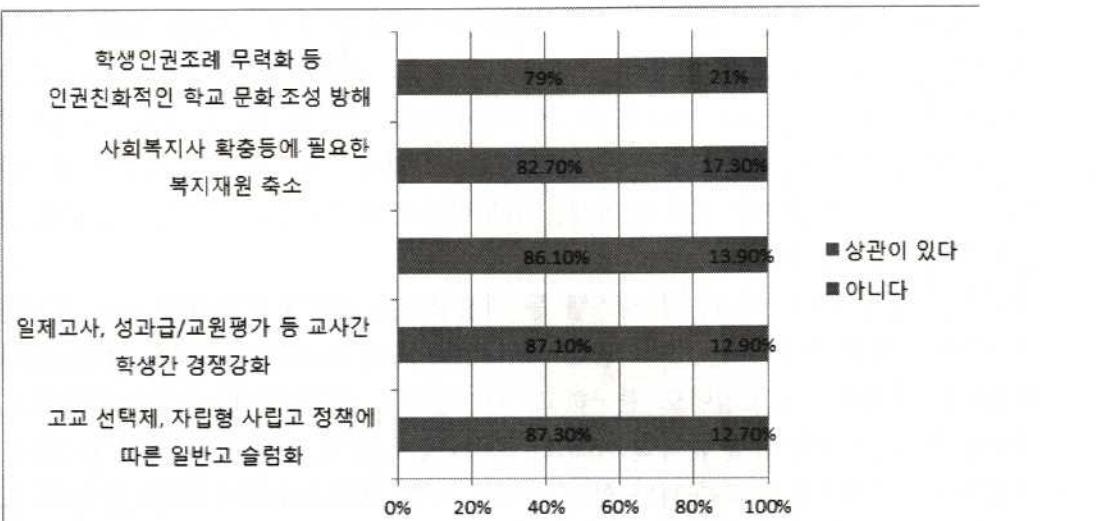


	매우 향을 준다.	대체로 향을 주지 않는다	긍정적	대체로 향을 주지 않는다.	체영을 주지 않는다.	별로 향을 주지 않는다.	부정적
1) 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 학생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	①72.4%	②23.5%	95.9%	③2.7%	④1.4%	4.1%	
2) 대학입시 위주의 자사고, 특목고 위주 정책,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정책	①73.6%	②18.9%	92.5%	③5.5%	④2.1%	7.5%	
3) 획일/전체주의가 강조되는 학교문화	①65.5%	②26.8%	92.3%	③6.6%	④1.1%	7.7%	
4)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인권/민주주의 요소 부재	①44.4%	②40.1%	84.5%	③13.1%	④2.4%	15.5%	
5)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	①40.0%	②45.6%	85.6%	③13.6%	④0.8%	14.4%	
6) 일진 문화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42.1%	41.2%	83.3	15.4%	1.4%	16.8	
7)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근본적 처방미약	①31.8%	②39.8%	71.6%	③25.1%	④0.3%	28.4%	
8) CCTV 등 학교 폭력 감시시스템의 부재	①12.5%	②28.5%	41%	③48.8%	④10.2%	59%	
9)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회환경	①61.8%	②33.4%	95.2%	③4.2%	④6.6%	4.8%	
10)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로 인한 가정붕괴	①59.2%	②32.2%	91.4%	③6.8%	④1.8%	8.6%	

- 학교 폭력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 자체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로 인한 가정붕괴’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91.4%에 이르렀고,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회환경’을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95.2%에 이르렀는데 사회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학생들의 무력감과 불안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 학생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이 95.9%였다. 학교 폭력은 학생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맺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이 학교 폭력을 증가하는 토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인권/민주주의 요소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각각 92.3%, 84.5%에 이르렀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84.5%나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참여와 자치의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폭력에 쉽게 물들 뿐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교과부가 주장하는 CCTV등 학교 폭력 감시시스템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은 41%에 불과했다.

나. 교과부의 교육정책과 학교폭력의 관계

다음의 교과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적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
1) 고교 선택제,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	①52.7%	②34.6%	87.3%	③10.0%	④2.7%	12.7%
2) 일제고사, 성과급/교원평가 등 교사간 학생간 경쟁강화	①60.9%	②26.2%	87.1%	③10.2%	④2.7%	12.9%
3) 전문상담가, 지역사회전문가 등학교 폭력해결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불안정한 배치	①40.4%	②45.7%	86.1%	③12.1%	④1.8%	13.9%
4) 사회복지사 확충등에 필요한 복지재원 축소	①37.0%	②45.7%	82.7%	③14.9%	④2.4%	17.3%
5)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방해	①40.0%	②39.0%	79%	③15.7%	④5.3%	21%

-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교육부가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쟁교육정책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87%, 전문상담가, 지역사회전문가 등학교 폭력해결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불안정한 배치가 학교 폭력 해결을 어렵

게 한다는 의견도 86.1%였다. 즉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과 학교 자율화의 외피를 쓴 고교선택제, 자립형사립고 정책, 일제고사 등의 경쟁교육 정책이 실제로는 학교 폭력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극심한 학업 경쟁 속에 내몰린 학생들이 일찍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무력감에 젖거나 임시 경쟁으로 끝까지 내몰림으로써 이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교내 비정규직의 증가, 학교 폭력 지원인력의 비정규직 채용이 학생과의 안정적인 만남, 책임있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교폭력 해결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생인권정책이 학교 폭력을 부추긴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해결을 외치는 교육부가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학교 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79%였다.

다.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 이유

1) 학생

학생들이 학교 폭력 상황을 교사나 학교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적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
보복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불신이 크다.	①61.6 %	②36.0%	97.6	③2.2%	④0.2%	2.4
학교폭력 해당 행위와 처벌 양형 위주의 예방교육으로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힘들다	①39.5 %	②49.9%	89.4	③8.9%	④1.7 %	10.6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낮아 폭력 상황이 심화되기 전까지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①26.5 %	②46.9%	73.4	③23.0%	④26.6%	49.6
피해 학생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폭력 문제를 드러내기 꺼려한다.	①40.6 %	②49.4%	90	③9.0%	④1.0 %	10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29.4%	53.1 %	82.5	15.9%	1.5%	17.4
징계/사법처벌 위주의 처리 방식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신고하기가 어렵다	①26.7 %	②45.4%	72.1	③25.7%	④2.2 %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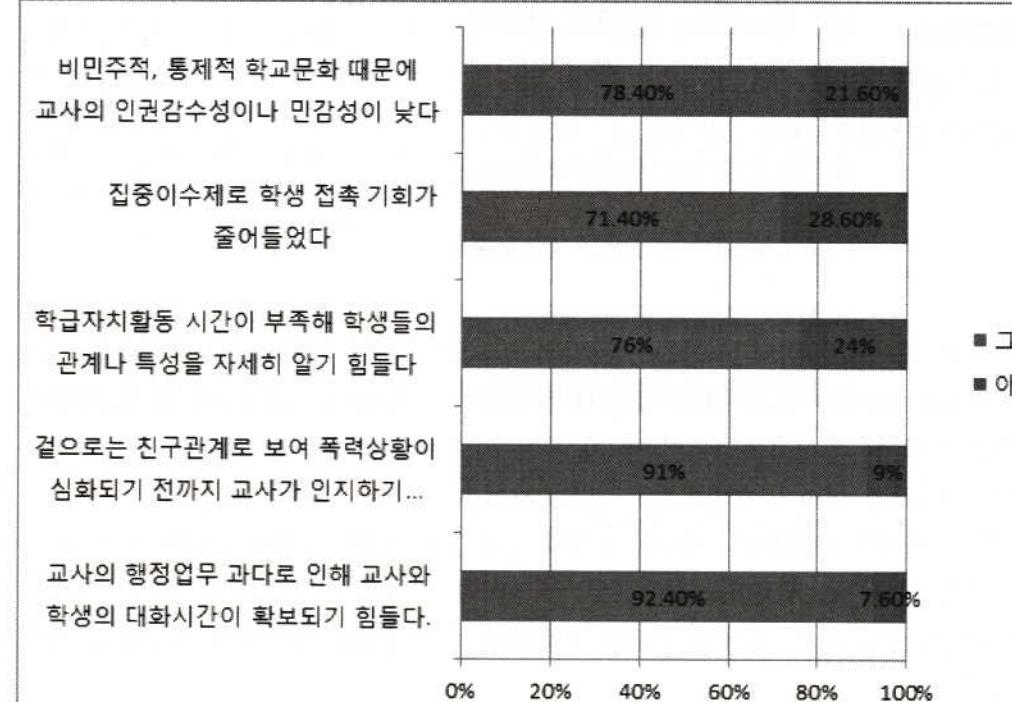
- 학생들이 학교 폭력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로 97.6%의 교사가 보복이나 재발방지나 대한 불신이라고 응답하였다. 교과부가 학교 폭력 해결을 공언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 폭력 해결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학교 폭력 예방교육으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을 학교 폭력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로 89.4%에 이르렀고,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낮아 폭력상황이 심화되기 전까지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73.4%였다. 개개인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폭넓은 폭력도 쉽게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당연히 문제제기 해야할 인권침해가 아니라 본인이 부끄러워해야한다고 여겨 폭력 상황이 심해지기 전까지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관계 안에서의 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90%,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피

해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82.5%였다. 즉 학교 폭력은 이미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친구라는 관계안에서의 폭력으로 관계가 깨지거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거라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 또, 교사-학생 관계든 학생-학생간의 관계든 관계안에서 존중해야 할 인권이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관계속에서 학생들이 폭력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채 신고와 처벌 위주의 학교 폭력 해결절차와 이를 안내하는 예방교육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징계/사법처벌 위주의 처리 방식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72.1%였다. 이는 엄벌위주의 방식이 오히려 학교 폭력이 감지 이후에도 증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오히려 교육적 개입을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사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인지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적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
교사의 행정업무 과다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이 확보되기 힘들다.	①56.3%	②36.1 %	92.4%	③6.8%	④.8%	7.6
겉으로는 친구관계로 보여 폭력상황이 심화되기 전까지 교사가 인지하기 어렵다	①39.0%	②52.0 %	91 %	③8.1%	④0.9%	9
학급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	①29.5%	②46.5 %	76 %	③22.4 %	④1.6 %	24%
집중이수제로 학생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다	①29.0%	②42.4 %	71.4%	③25.5 %	④3.1 %	28.6 %
비민주적, 통제적 학교문화 때문에 교사의 인권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낮다	①35.9%	②42.5 %	78.4%	③17.9 %	④3.7 %	2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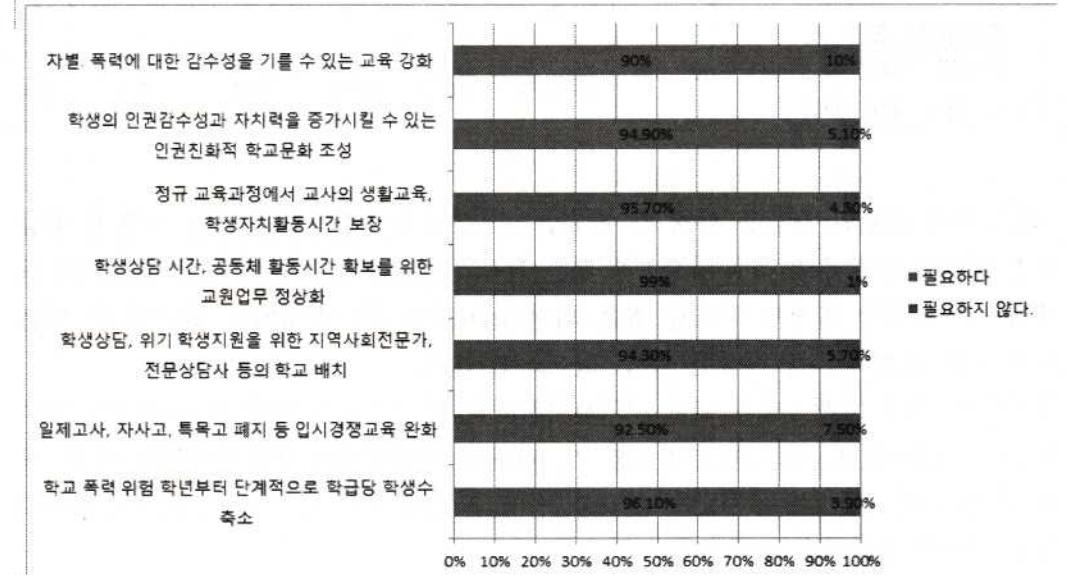
-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교사의 행정업무 과다로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응답에 92.4%가 동의 하였다. 즉 수업과 학생들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이 때문에 교사가 학교 폭력을 감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비민주적, 통제적 학교문화 때문에 교사의 인권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낮아서 학교 폭력 감지가 어렵다는 답변도 78.4%였다. 지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수직적인 문화에 있다보니 학생들 간의 지시와 통제를 폭력으로 문제시하여 감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학급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는 의견도 76%였고, 집중이수제로 학생접촉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71.4%였다. 학생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모토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파생된 집중이수제 등 과행적 교육과정이 오히려 학교 폭력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치활동시간이 흡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활동시간이 부족해졌고, 집중이수제로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마치는 등 어느 학기에는 수업시간에 학생을 만나지 못한 채 담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이다.

4. 학교 폭력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가.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금정적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
1)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	①72.4 %	②23.7%	96.1 %	③3.3%	④6%	3.9 %
2) 일제고사,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 입시경쟁교육 완화	①68.4 %	②24.1%	92.5 %	③5.7%	④1.8%	7.5 %
3) 학생상담, 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 전문상담사 등의 학교 배치	①63.8 %	②30.5%	94.3 %	③5.0%	④0.7%	5.7 %
4)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①76.3 %	②22.7%	99%	③0.7%	④0.3%	1%
5)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 보장	64.9%	30.8 %	95.7 %	4.0%	0.3%	4.3 %
6)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자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①69.5 %	②25.4%	94.9 %	③3.7%	④1.4%	5.1 %
7) 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강화	63.8%	26.2	90%	2.4	0.6	3%

-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 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를 뽑은 교사가 99%,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뽑은 의견이 96.1%. 즉,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 학생상담, 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 전문상담사 등의 학교 배치를 뽑은 의견도 94.3%였다. 이는 학교 폭력의 가, 피해자 지원과 일상적인 상담활동 지원, 위기 가정 등에 각종 복지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상담가와 지역사회전문가의 지원이 학교 현장에 절실히 보여준다.
-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보장을 뽑은 의견이 95.7%, 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90%,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자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뽑은 의견이 94.9%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촉진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야 말로 학교 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토양임을 보여준다.

나.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변화 방향

현재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금정적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부정적
1) 1차 중재조정 절차 의무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1차 중재 조정 절차를 의무화 한다.)	①47.5%	②46.1%	93.6%	③5.1%	④1.3%	6.4%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양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구성원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 조정전문가를 포함시킨다.	①57.0%	②35.2%	92.2%	③6.7%	④1.1%	7.8%
3) 가, 피해자 외 폭력 발생한 공동체 단위 인권 교육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 피해자 당사자 이외에도 가, 피해자가 속한 학급단위 상담 및 치료, 인권교육을 제도화한다)	①54.3%	②38.8%	93.1%	③6.0%	④0.9%	6.9%
4) 학교폭력 지원 협력 인프라 구축 의무화 학교 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조정 전문가를 확충하고 스쿨폴리스처럼 전담 체재를 갖춘 인력풀 조성을 의무화한다.	①57.5%	②35.5%	93.9%	③5.9%	④1.0%	6.9%
5) 가해, 피해 학생의 변론 및 재심 기회 보장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해, 피해 학생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재심기회를 보장한다.	①49.5%	②42.3%	91.8%	③6.9%	④1.3%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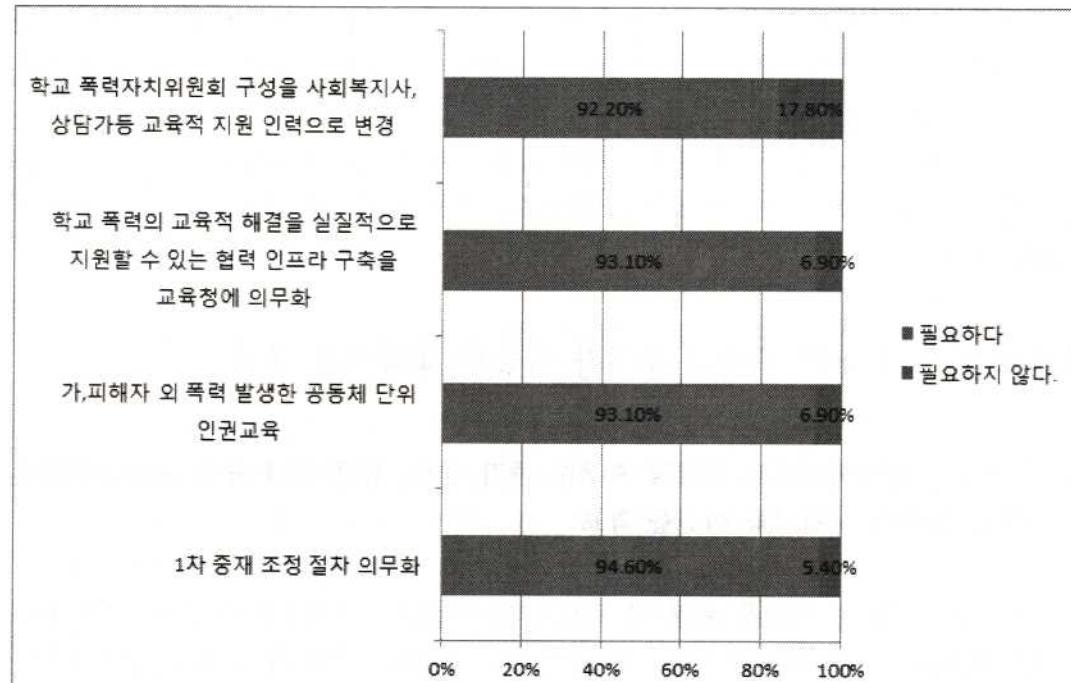
- 현 학교 폭력 해결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시 화해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93.6%였다. 즉 가해 학생을 숙아내고, 배제하는 사법처리 위주의 학교폭력 해결방식보다는 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이는 생기부 기재 정책 이후 학교 폭력의 실질적 해결기구로 기능해야 할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가해자의 형량을 판단하는 사법기구로 전락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전 화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 폭력 처리가 관계의 단절이 아닌 관계의 회복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절차화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양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를 실행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구성원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 조정전문가를 포함되도록 현재 학부모와 교원으로만 이루어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92.2%, 학교 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재조정 전문가를 확충하고 스쿨폴리스처럼 전담 체재를 갖춘 인력풀 조성을 의무화한다는 의견이 93%였다. 이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가, 피해자 지원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가, 피해자 외 학교폭력이 발생한 공동체 단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1%로 학교 폭력 문제를 단순히 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접근 할 때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폭력 사건 처리 이후 관계 회복이나 학교생활 적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결론

1. 징벌 중심의 학교 폭력 해결절차를 교육 중심의 회복적 절차로 전환
가. 학교폭력 대응절차에서 화해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 폭력 가, 피해자 실질적 지원 중심의 솔루션 체제로 개편,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시스템 확충
- 현 학교 폭력 해결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부시 화해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3.6%였다. 즉 가해 학생을 속아내고, 배제하는 사법처리 위주의 학교폭력 해결방식보다는 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기구로 설치되었으나 현재



-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의 형량을 판단하는 사법조치기구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실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이후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상처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 대부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이혼, 경제적 궁핍 등 일상적인 돌봄에서 배제되어있거나 과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경험을 갖고 있거나 억압적인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오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자존감 상실, 재발에 대한 우려, 신고자라는 공동체에서의 낙인으로 인한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 전문가는 일상적인 돌봄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시키고, 일상적인 삶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오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전문상담가의 치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될 때, 단순히 사법적 조치만이 아닌 교육적 지원과 치유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를 철회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 역시,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교 폭력 생활기록

부 기재가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학교 폭력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답변도 86.5%에 이르렀다. 앞에서 약술했듯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 폭력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은폐하게 하거나 교사로 하여금 학교 폭력에 개입하는 데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2.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가능한 교육여건 조성

가. 학교폭력 위험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즉각 감축, 학급-학년 중심 교원업무체계 마련 등 교사의 생활교육 여건을 확보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 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를 끊은 교사가 99%,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끊은 의견이 96.1%. 즉,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끊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못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과의 관계, 교사-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업과 학생과의 만남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현재 행정업무 중심의 교원업무를 학급-학년 중심의 교원업무 체계로 개편해야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학교에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평화로운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서만이 학교 폭력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나. 일제고사, 고교서열화 등 경쟁교육·특권교육 폐지

일제고사, 고교 서열화 등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조기에 학업에 대한 의욕을 잃고 절망감에 빠지거나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로 관계 맷음에 실패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기력과 절망, 스트레스가 타인에 대한 공격심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3. 인권과 평화의 학교 문화 조성 및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학생 참여 역량 강화

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안착화 지원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보장을 끊은 의견이 95.7%, 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90%,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자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끊은 의견이 94.9%였다. 교육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호도했지만, 다양성을 인정받고 인격체로 존중받아온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차별과 그 차별에 따른 폭력을 당연하게 여긴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 문제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통제적인 문화속에서 인권감수성이 함양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민주적, 통제적 학교문화 때문에 교사의 인권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낮아서 학교 폭력 감지가 어렵다는 답변도 78.4%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통제적인 문화속에서 교사 조차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촉진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야말로 학교 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토양임을 보여준다.

나. 학생의 주체적인 인권·평화 감수성 향상을 통한 관계력 회복을 위해 주1회 학급 회의 실질화 등 정규 교육과정 내 학생 참여권을 보장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교사-학생, 학생-학생들간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한탓이 크다. 실제 교사가 학교 폭력 문제를 감지 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급 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는 의견도 76%였고, 집중이수제로 학생접촉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71.4%였다. 실제로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보장을 끊은 의견이 95.7%였다.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꾸려해도 정규 교육시간에 안정적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이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진 학급회의 등의 학생자치활동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학생들이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선 경

힘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85.6%에 이르렀다. 또, 92.8%의 교사가 일상적인 참여, 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즉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때 학교 폭력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모든 학교 구성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인권·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질화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씩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학교 폭력 가해 행위 열거 및 사법 처리 양형 제시 위주의 1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83.2%이었다. 교사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꼽은 내용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 및 관계 회복 방법’, ‘일상적인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존중의 문화 조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감능력’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인권과 평화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의 인권평화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평화 감수성 향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학교폭력 기재’ 대입활용? 외국엔 거의 없었다
해외 11개국 긴급조사... 교과부 “기존 해외자료 부정확” 시인
<오마이뉴스 2012.09.03.>

▲ A교육청이 3일 조사 뒤 작성한 ‘학교폭력 기재여부 해외 현황’ 자료.

④ 관련사진보기

〈학교폭력 기재여부 해외 현황〉			
번호	국가	내용	기타
1	러시아(1)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고 심각한 경우 경찰에 의뢰하여 폭력관련 내용은 학적부에 진짜 기록되지 않음 학생지도요록은 법적 장부이나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음 ‘조사서’라는 것이 있는데 학생의 성격이나 행동특성 등을 기록하지만 학생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지는 않음	
2	일본	학생지도요록은 학교 내부 문서로 상급학교에 제공되거나 않으나 조사서는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번호	국가	내용	기타
9	뉴질랜드	리포트를 작성하여 관련 교사가 보관하며 상급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만 기록이 제공되기 때문에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이 없음 별도의 학생사안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학생의 상황을 학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대처	

한국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기재해 대입과 취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해외 11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서면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해외의 학생 징계 학생부 기록 사례’란 자신들의 문서에 대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6개국 ‘학생 징계’ 미기재... 나머지 나라들도 대부분 중간삭제

이날 A교육청이 만든 ‘학교폭력 기재여부 해외 현황’이란 문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사실을 상급 기관 지시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나라는 11개 조사국 가운데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6개국이었다.

학생부에 기록하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5개국이었지만 대부분 중간삭제제도 등을 활용해 대입과 취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 앞서 '이지메'(왕따돌림) 등으로 사회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생부와 같은 '학생지도요록'이나 '조사서'에 학생 징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A교 육청 문서는 "학생의 성격이나 행동특성 등을 기록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상급학교에 학생 징계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재일 한인학교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담임이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뉴질랜드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지만, 두 나라는 교사가 자체 참고자료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국가 차원의 강제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학교들은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대입과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지메' 논란 일본도 학생부에 징계사실 기재하지 않아

징계사실을 기록하는 나라도 대부분 대입과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프랑스와 중국, 태국은 학기별, 학년별, 졸업 직전 등으로 나눠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중간삭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태국은 졸업 뒤 일괄 삭제해 대학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중국은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학생부 기재 여부가 달라 사실상 대입 활용이 불가능했다. 호주도 24세까지는 보관하지만 징계기록은 범죄기록과 달리 상급학교와 취업 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법으로 학생징계 삭제를 명문화한 프랑스가 눈길을 끈다. 프랑스는 교육법(2011년 6월 24일 개정) 권5(학교생활)에서 "경고, 질책, 견책은 학년도가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하고 퇴학을 제외한 징계 기록은 1년 후에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프랑스 교육법은 "학생이 전학을 갈 때는 언제나 학생부의 징계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부의 징계 기록은 중등 과정이 끝나면 삭제 한다"고 규정했다.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교과부는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로 보관하며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올해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간삭제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교과부 "해외와 우린 학생부 개념 달라, 따를 필요 없다"

해외의 학생 징계 학생부 기록 사례

□ 해외 사례

○ 미국 : 5단계*로 나눠 징계, '교내 정학' 단계부터 학생부에 기록

• 균신 - 토요 균신 - 교내 정학 - 교외 정학 - 퇴학

○ 영국

- (공립) SIMS 시스템(한국의 NEIS)을 이용하여 징계사항을 기록

- (사립)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재하는지 모두 파악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영국계 국제학교인 NLCS의 경우는 기록

○ 프랑스 : 8단계로 나눠 징계, 학생부에 기록

• 경고 - 언어적 훈육, 20시간 이내의 교내 또는 교외 복임교목 - 8일 이내의 학급 유기 정학 - 8일 이내의 학교 유기 정학 - 무기 정학 - 퇴학

-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캐나다

-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음

기사 관련 사진

▲ 교과부가 국회에 보낸 '해외의 학생 징계 학생부 기록 사례' 문서.

⑤ 교과부 관련사진보기

한편,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해외의 학생 징계 학생부 기록 사례'란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국회 교과위 소속 여당 의원은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 사례가 적혀 있는 이 교과부 문서에는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나라로 캐나다만을 예로 들었고 나머지 나라는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출석정지'를 (학생부에) 기재"라고 적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

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나라들도 '중간삭제제도 시행과 대입 미활용'에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 해외 사례 왜곡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기존 교과부 해외 사례는 주재원들을 통해 올해 4월 조사한 것"이라면서 "양식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조사하다보니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고 오류도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의 경우 커녕도 대입에 활용한다는 보고가 있는 등 교육청 차원의 해당 조사자료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해외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기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20여 개국을 상대로 학생부 학교 폭력 기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부 토론회>

- 고유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장)
- 구희현(학교폭력공대위)
- 정제영(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학교폭력 예방정책 중점 연구소)

〈토론1〉

상담사례로 본 학교폭력 종합대책

고유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장)

2012년 2월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이 오히려 늘었다. 2011년에는 총 520건 중 69건(13.3%)이었는데 2012년에는 총 398건 중 81건(20.4%)으로 건수와 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했다.

이것은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징계되는 건수가 늘어났고 징계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보존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의 2012년과 2013년 5월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예년에는 피해학생 학부모상담이 조금 더 많았는데 비해 이 기간에는 가해학생으로 규정된 학생의 학부모상담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행동에 비해 징계에 따른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며 피해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학폭위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피해학생의 편만 드는 학폭위

사례1)

중1딸아이가 아이들끼리 다른 아이의 외모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전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다. 처음에는 서로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문을 쓰고 해결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폭위를 요구하였다. 학교는 자세히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의 편만 들었다. 그 와중에 말을 전한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으로 남게 되었고 ‘서면사과’ 징계를 받았다. 우리 아이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자기도 똑같이 부당한 일을 겪었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며 학교는 조사도 공정하지 않고 피해학생 말만 듣고 그런 징계를 내린 것 때문에 자포자기상태에 빠져있다.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아이는 징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거라며 힘들어 한다.

당사자 간의 화해보다는 무조건 징계절차를 밟는 학교

사례2)

중2인 우리 아이가 작년 5월에 9명 아이들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가 열렸고 사회봉사 3일을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생활지도부장이 “너 감옥갈래?” “집단폭행으로 결찰서 갈래?” “죽어볼래?” 등 폭언은 하며 공정치 못한 조사를 했고 진술서 내용도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고 강요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등 위압으로 조사를 했다. 엄마들이 학교에 찾아가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2,3차 진술도 여전히 협박과 강요 속에서 진행되었다.

가해학생이 신고한 후 일주일 만에 학폭위가 열렸는데 학교에서는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해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커녕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조사하고 학폭위를 열어 무거운 징계가 나왔다. 나는 과도한 징계와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했는데 학교에서는 학폭위원인 학부모를 내게 보내 아이를 학교에 다니게 하려면 조용히 하라며 협박했고 서면사과로 낮춰주면 되겠냐고 회유도 했다.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그러나 우리아이가 받은 사회봉사 3일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이중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싶고 생활지도 교사의 전횡도 막고 싶다.

학부모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조사하고 서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서둘러 학폭위를 열고 징계를 결정해버리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전담교사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한다. 또한 학교폭력저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 것에 대해 억울해한다.

가해학생의 변론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강압적인 학폭위

사례3)

우리 아이를 포함한 4명이 한 아이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생부 조사를 받고 학폭위가 갑자기 열려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에 참석해보니 위원들은 조사내용에 있는 행동을 했느냐고 묻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이야기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눈치였다. 우리 아이도 그 아이에게 평소에 언어폭력을 당해왔는데 우리 아이 말은 잘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생기부에 기재되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나머지 3명은 반성문 5

일 명령을 받았다. 우리 아이는 이 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4)

중1 남자아이의 엄마다. 학교에서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아이를 놀려 그 아이가 응급치료를 받는 일이 생겼다. 학교에서는 반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조사했고 4명의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그 중 3명은 잘못을 시인했고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가해자로 오인되었다. 학폭위가 열려 나는 우리 아들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계속 부인했고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서면사과를 통보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우리아이의 결백을 증명해줄 수 있는 아이들도 서너명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학폭위를 열어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사례5)

학교로부터 우리아이가 가해자로 온라인 신고됐으니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다음날 교장선생님을 뵙고 학교폭력 조사과정이 졸속이고 학폭위를 열기 전에 학부모나 아이들끼리 만나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오해를 풀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했더니 그 일은 학생부장 소관이라고 말하며 학생부장을 불렀다. 학생부장은 우리 학교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를 연다며 오히려 일처리를 빨리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는 투로 말해 어이가 없었다.

학폭위날 학교에 갔더니 학부모와 학생으로 복도가 꽉 차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1,2,3학년 전부 한날한시에 학폭위 출석통보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하루에 한 다행도 시간차이라도 두지 않고 시장같은 분위기를 만든 학교의 일처리 방식에 화가 났다. 초조하게 기다리다 불려가는 식이었다. 우리 아이차례가 되어 들어갔는데 학부모 위원 중 한분이 우리 아이에게 대뜸 “할 말 해라”고 했고 우리 아이는 쭈뼛쭈뼛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며 말끝을 흐렸는데 학부모위원이 소리를 지르며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러느냐?”며 화를 냈다. 우리 아이는 너무 위축되고 벌벌 덜면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밖에서 다른 교사가 노크하며 다른 학부모가 기다린다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나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나왔다. 우리 아이는 결국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5일을 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억울한 것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만나 서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과 학폭위 때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제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미한 사안 까지도 학폭위를 열어 징계하고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의 문제점

사례6)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이다. 동네 놀이터 놀이기구에 한 아이에 대한 비방 낙서를 썼다는 이유로 4명과 함께 학폭위가 개최되어 서면사과와 심리상담처분을 받았다. 학생부에 기재된다는 결과통보서를 받고나니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한 번의 실수로 졸업 후 5년 간 기록이 보존되어야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이런 조치가 얼마나 불합리 한지 알게 되었다.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할 생각이다.

강한 징계를 바라는 피해학생학부모

피해학생학부모들은 대부분 가해학생의 전학을 원한다고 했다. 엄한 처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학폭위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과 그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것은 처벌위주의 처리방식이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해 진다고도 한다. 하지만 처벌의 경중의 문제라기보다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화해할 기회를 주지 않는 처리방식의 문제이다.

사례7)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유학을 다녀온 후에 두달 동안 3명의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았다. 가해자 부모와 통화도하고 만나기도 했다. 한 아이 부모만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다음날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 나는 주동자인 한 아이만 다른 학교에 전학을 보내고 싶다. 그 아이는 정말 아이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만을 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은 내 마음을 너무 모르고하는 소리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사례8)

중3인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아이한테 카톡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가 폭행을 당해 입이 찢어지고 앞니가 3개나 흔들린다. 학폭위가 열렸고 나는 가해학생의 전학을 원했는데 학급교체와 교내봉사가 나왔다. 학폭위 이후에도 우리아이는 상대방아이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협박을 받고 있으며 그 아이는 나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있다. 우리아이는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이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학교에는 가해자였다고 오해를

받기도해서 힘들어했었다. 이 사건이 있고나서 학교에서는 지난 학교에서 있었던 일까지 들추며 이야기 하는데 기가 막하다. 꼭 우리아이가 가해학생 같기만 하다. 가해학생을 전학시키지 말고 화해하라는 말만하는데 또다시 폭행하겠다는 아이와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니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사례9)

학교폭력실태조사 중에 우리아이가 6명의 아이를 지목했고 그 아이들 학생부의 조사를 받으며 우리아이가 자기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우리 아이를 화장실에 불러 진술서를 약하게 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 아이들은 2년 동안 구타와 욕과 감금과 집단 폭행을 해왔다. 우리 아이는 가해자 아이들의 협박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최근의 것만 중심으로 약하게 썼고 학생부장도 수업 들어가야 한다며 5분 안에 쓰라고 해 자세히 쓰지 못했다고 한다. 학폭위 진행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가해자로부터 계속 협박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우리 아이에 대한 폭력사실을 아주 약하게만 인정하고 모두 부인했다. 우리 아이는 아이들로 부터 협박과 두려움에 못 이겨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썼고 경위서에 사인을 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2명에게는 출석정지, 나머지 네명에게는 봉사활동을 결정했다. 난 그 아이들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는 아이가 몹시 불안해서 학급교체를 요구했는데 학생부장은 징계는 징계대로 받게 하고 피해자 권리만 주장한다고 거절했다.

생기부 기재 때문에...

사례10) 공부잘 하는 학생에게 가벼운 징계를 주라는 학교

학폭위원회이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맞은 아이가 3주 진단이 나왔다. 가해학생은 공부 잘하는 아이이고 엄마가 학교일을 열심히 해서 선생님과의 친분도 있다. 두 아이는 멘토 멘티 관계인데 평소에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해 왔다고 한다. 사건조사 첫날은 상제전학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학폭위 전날은 피해자측에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진학할 아이인데 이 사건으로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합의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합의를 거부하자 쌍방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생활지도부교사가 편파적으로 밀어붙이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것을 종용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부모위원들은 부당하

다는 생각을 했지만 교사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내봉사 3일의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례11)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기 위해 합의종용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더니 가해학생 엄마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학폭위가 열리면 징계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5년간 보존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가는 데도 지장이 있다. 당신이 우리 아이 앞길 막치려고 하느냐며 학폭위를 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했다. 나도 우리아이가 당했지만 그렇다고 상대아이의 인생을 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말로 합의를 종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례12) 책임지지 않으려는 학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생기부 기재도 부담스러워 학폭위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차례대로 전화를 해서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나중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서약서를 요구했다.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화가 난다. 나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학교에 처리를 맡긴 것인데 이렇게 책임을 모두 나에게 떠넘기는 것이 불쾌하다.

처벌하는 방법밖에는 없나?

사례13)

학폭위원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서 가보면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한다. 징계를 하지 않고 화해시킬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장과 학폭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폭위에 올라오면 무조건 징계를 해야 한다며 다른 노력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 징계를 해도 아이들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 말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결론

학교폭력종합대책이후 학교폭력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가해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학교폭력처리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피해학생학부모는 강한 처벌, 특히 강제전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학폭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가해학생의 태도로 인해 학교생활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학교폭력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피해학생에게는 피해와 손실에 대해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이 진정한 반성과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기다면 피해학생 학부모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강제전학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2. 인권을 존중하며 동정한 사안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한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일방적인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가해학생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학폭위 절차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한 억울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기회를 뺏는다. 학교폭력조사과정과 학폭위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대우와 절차상의 문제 강압적인 분위기도 개선되어야한다.

3. 처벌하기 전에 반성하고 화해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한다.

가해학부모는 물론 피해학부모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위주의 처리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말한다.

4. 학교폭력가해사실 생기부 기재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당사자가 되고서야 생기부기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감한다. 가해학생학부모는 어떻게든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피해학생학부모는 가해학생을 처벌하면 학생부에 기재되어 그 학생의 앞길을 막칠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학폭위의 결정사항이 단지 징계로 그치지 않고 생기부 기재까지 되

다보니 학폭위의 절차나 결정사항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져서 재심과 행정심판의 청구가 폭증했다. 예방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은 생기부 기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토론2〉

학교폭력 사실 미기재에 따른 경과내용 및 일정과 대응 사례

구희현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 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학생부 기재유보에 따른 교과부의 과도한 탄압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률적,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부 지침은 아이들에게 폭력 전과를 찍어 미래와 인생을 송두리째 뺏는 것이어서, 반교육적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가혹한 처사이고 아이들의 회복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조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도교육감과 현장교사,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모으고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누차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빈번히 묵살했던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징계위주로 문제를 미봉하려는 교육부에 맞서 합법적 테두리에서 2012년 9월에는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교과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2012년 12월 5일에는 전북교육감과 경기교육감이 교육감의 신청 없는 교과부장관의 특별징계위원회의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는 원천무효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22일에는 국민 851명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여 “교과부의 부당한 특정감사로 인한 보복적으로 교육청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3년 2월 11일에는 국민 8,717명이 일주일 만에 서명에 동참하여 “박근혜 당

선자 인수위”에 민원을 접수 했다.

2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교육부 후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해결과 대화를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통 그 자체였다.

이주호 전임 장관이 불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교육계 등에 갈등을 증폭시킨 그 책임을 지지 않고 퇴임한 상황에서 특히 헌법재판소, 검찰과 법원 등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교육청 공무원들을 징계 집행을 강행하기 위해서 또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을 고발하려는 수순으로 착수하는 것은 법적절차나 일반상식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해 보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로 판단한다.

2.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관련 내용 및 일정

- 2012.1.27 교과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교과부 훈령 제239호, 3월부터 시행)
- 2.7 정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 기록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고등학교 10년
- 2월 경기교육청, 교육부 지침 재고 요청
- 3.26. 전북교육청, 교육감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입장 발표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인권보장 원칙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의 매우 중할 경우에만 입력하되, 이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최종적인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 기록으로 유지하고, 외부공개 금지 원칙 준수토록 보도자료 발표
- 6.29. 교과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훈령 제257호)
 - 기록 보존기간을 고등학교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함.
- 7월 경북의 학생(학부모), 6. 2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훈령 제257호)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 교과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공문 시행
- 8.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 “학교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

-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2012. 8. 16.)

-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 기재보류 또는 기재하지 않도록 산하 학교에 방침 전달
- 8.24 교과부,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 방침 전달 공문에 대한 직권취소명령
- 8.23~9.13 교과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경기도 교육청과 전북 교육청 특정 감사 실시

○ 9.4. 대법원에 교과부의 8.24일자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 9.4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이주호 장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 9. 26. 국회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위헌 소지 입장 표명

○ 10. 16. 교과부 1차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징계절차 요구

-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은 기관경고와 총 143명 징계 요구
(충징계 19명, 경징계 19명, 경고 105명), 교육감과 15명의 학교장 등 16명을 고발
-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하여 충징계 요청

○ 11. 15.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 재심의 신청, 11. 20. 재심의 신청 기각 통보

○ 11. 22. 교과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 11. 30. 교과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 공문을 단위학교에 직접 전달

○ 12. 5. 경기 및 전북교육청,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제기

○ 12. 5. ~ 12. 14. 교과부 2차 특정감사 실시

○ 12. 14. 경기 및 전북교육청, 헌법재판소에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절차 개시

○ 2012. 12월 서울의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가처분 신청

○ 2013.1.22. 경기 공대위, 851명 명의로 감사원에 이주호 장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2013. 2. 15 교과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 2.18. 공대위 구성하여 특별징계위원회 강행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 2.18 전북 징계 의결 : 경징계 16명, 불문경고 3명
- 2.19 경기 징계 의결 : 경징계 4명, 불문경고 24명
- 3.11 공대위,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3.20 징계처분 시한 경과
- 3.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 2.18~4.12 공대위, 징계취소·고소고발취하·학생부기재지침취소 촉구 1인시위 진행
- 6.12 학교폭력 대안 토론회 개최예정 (국회 배재정의원실, 공대위, 전교조등)

3. 향후 학교폭력 사실 미기재에 따른 징계등에 대한 대응

지난 2012년 2월부터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부 미기재의 공방은 2013년 6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7월경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개선하여 제시하겠다고 한다.

학교현장과 교육계, 시. 도교육청은 사법적인 징벌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보다는 회복적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을 안을 제시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병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교육부가 헌법과 법률 등 실정법을 어기고 강행한 “학교생활부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을 고발한 행위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하고,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직권남용으로 의결한 특별징계건에 대해서도 결자해지 입장에서 반드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토론3〉

학교폭력 의견 조사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2012기장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토론에 들어가며

최근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가 되었고, 범정부적인 예방과 정책적 대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6조에 따라 2005년부터 제1차 기본계획(2005년~2009년)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10년~2014년)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2011년 말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면서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6일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였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범죄라고 느끼게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성교육 강화나 교육방법의 개선, 교직문화의 변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직접 대책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둘째,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셋째,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이다. 3개의 근본 대책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둘째,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셋째,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등이다.

의견 조사는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신 노력에 감사 드리며, 발표자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와 정책적 제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2.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발표에 나타난 의견조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그 목적과 달리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이 기획단계에서 본래 의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정책평가와 환류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 부분,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진단과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 이유,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부분은 정책당국에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론자는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표문에 제시된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의견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온라인회원 1,00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교사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다른 교원단체 뿐 아니라, 전체 교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문항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전체 교원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발표자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70.4%의 교사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1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항목에 교장 및 교감(86.6%), 학부모(81.2%), 교사(79.9%), 학생(68.9%)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3년 2월 발표된 한국교총의 교원 1,447명 대상 설문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18%)' 뽑혔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2년 8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63.7%, 교사의 62.9%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설문의 결과가 전체 교사의 인식을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 도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학생							
전체	799(2.7)	1,927(6.6)	7,861(26.9)	10,968(37.6)	7,625(26.1)	29,180(100)	
초등학교	259(1.9)	616(4.6)	3,566(26.8)	4,953(37.2)	3,910(29.4)	13,304(100)	307.707***
중학교	297(3.1)	783(8.2)	2,594(27.3)	3,601(37.9)	2,230(23.5)	9,505(100)	
고등학교	243(3.8)	528(8.3)	1,710(26.7)	2,414(37.9)	1,485(23.3)	6,371(100)	
교사							
전체	475(4.2)	1,304(11.4)	2,453(21.5)	5,098(44.5)	2,104(18.4)	11,434(100)	
초등학교	227(4.0)	662(11.6)	1,209(21.1)	2,473(43.2)	1,149(20.1)	5,720(100)	30.156***
중학교	128(3.9)	357(10.9)	698(21.4)	1,524(46.7)	559(17.1)	3,266(100)	
고등학교	120(4.9)	285(11.6)	546(22.3)	1,101(45.0)	396(16.2)	2,448(100)	

***p<.001

출처 : 한유경 외(2012). 위기학생 진단 및 교육적 지원에 관한 연구. p.112.

둘째, 일부 설문 문항과 그 결과의 해석 과정에 편향된 관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1회성 인성교육이 학교 폭력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95.4%라는 결과를 두고 '인성교육 강화라는 교과부의 구호는 학교 현장에서는 허구임이 드러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인성교육 강화라는 정책이 1회성 인성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의 실패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 정책적 제언에 대한 검토

발표자가 제안한 정책적 제언은 대부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해결 절차를 교육 중심의 회복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인권과 평화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쟁적 입시 위주의 교육 보다는 학생의 소질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폭력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거는 사회적인 기대는 매우 크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2부

아이들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소수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폭력 문제를 완전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생님 개인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가정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위기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전 생애에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에 재학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며, 이 시기가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 아이들이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보낸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문제 발견(screening)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래 상담, 역할극, 멘토링 제도 등 학교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통한 학교 안 프로그램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들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수준에서 관리나 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연계하는 역할이다. Wee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치료기관 등이 연계된 학교폭력 대응 체제가 구축되고 유기적인 연계 아래 협력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와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처방과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학교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치의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학교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소수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사례1〉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과 사례

관계성 향상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 대표)

[목차]

1. 교육의 회복,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 가. 학교폭력의 원인
 - 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지향점
 - 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관점 회복하기
 - 라.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2.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모델과 사례
 - 가. 공감적 의사소통, ‘비폭력대화’
 - 나. 적을 협력자로 부르는 공동체의 자기 돌봄 프로세스, ‘회복적 서클’
 - 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전후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 라. 내면의 힘을 길러 주는 평화감수성 교육
 - 마. 개인의 성장을 통한 공동의 지혜를 모으기, ‘서클’
3.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과제
 - 가. 교사의 역할 변화와 역량 강화
 - 나. 교육 구조의 변화
 - 다.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
4. 결론